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45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550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896,770원, 지방교육세 2,949,610원 합계 34,846,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9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부동산에는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직접 승계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3)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9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을 제2호증(지방세과세예고통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본세 24,006,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01,2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89,570원, 지방교육세의 본세 2,400,6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40,0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8,95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각 세목의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합계액(취득세 31,896,770원, 지방교육세 2,949,610원)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송한 지방세과세예고통지(을 제2호증)에도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것으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9

되어야 하고, 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